

[서식 예]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서울특별시 ◇◇구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 소송수행자 □□□

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처분의 경위

피고는 서울 ○○구 ○○길 ○○○의 ○○ 소재 건물 1층에서 "◎◎노래방"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고 있던 원고가 20○○. ○○. ○. 접대부 ◆◆ ◆, △△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○○. ○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3개월 간 (20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.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.



2. 처분의 위법성

- 가. ▲▲▲, ▽▽▽는 약 1년 전 서울 ○○구 ○○길 소재 ●●나이트클럽에서
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◆◆◆, △△△와 20○○. ○○. ○○.○○경 위
 ●●나이트클럽 앞에서 만나 ◎◎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.
- 나. ▲▲▲ 일행이 위 ◎◎노래방 ○○호실에 입실하여 약 10분간 저알콜 음료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, ○○구 경찰서 ○○길 파출소 소속 단속반 7, 8명이 위 ◎◎노래방에 들어와 ▲▲▲, ▽▽▽, ◆◆◆, △△△를 서로 다른 방으로 데려가 접대부 고용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.
- 다. 당시 ◆◆◆, △△△는 자신들이 접대부가 아니라며 강력히 항의하여 단속반원들이 요구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, ▲▲▲, ▽▽▽는 집으로 전화를 하여 여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알리겠다는 단속반원들의 말에 가정불화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, 단속반원들이 미리 작성한 "시간당 1만원씩주기로 하고 ▲▲▲, ▽▽▽를 불렀다"는 취지의 진술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.

라.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.

3. 결 론

이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본 건 소를 제기합니다.

입 증 방 법

1.	갑	제1호증	행정처분통지서
1.	갑	제2호증	노래방등록증
1.	갑	제3호증	사업자등록증
1.	갑	제4호증	사실확인서
1.	갑	제5호증	영업소내부사진

첨부서류

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①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